

#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## 시 정 요 구

제 목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추진 부적정

기 관 명 충청남도

내 용

지방도로 중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중앙분리대, 교통섬 등 교통사고예방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도로교통환경조성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「교통안전법」 제15조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으며, 충청남도에서는 국고보조금을 교부 받거나, 지방비 자체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,

‘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’을 시행할 때는 舊 국민안전처 「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 추진지침」에 따라, 경찰청·도로교통공단에서 수립한 「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개선 계획」에 포함된 대상지 중 ‘사고다발지역’을 우선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.

한편 舊 국민안전처에서는 2017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국비 배분계획을 충청남도에 통보{舊 국민안전처 ○○○○과-○○○○(2016. ○○. ○.)}하였고,

충청남도에서는 2016. 11. 02. 2017년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계획 수립지침

을 시·군·구에 시달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통보하였으나,

사업대상지에 대한 효율성·타당성 검토 및 사업지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토 절차 없이 시·군 사업비 배분 형평을 감안 타 사업 배분 시·군 제외, 국비 배정규모를 감안 지원 형평 및 최소금액 신청 시·군 선정 등의 사유로 「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 추진지침」과 다르게 사고다발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지 않고 '17년 9·19·24위, '16년 5위, '15년 20·22위를 사업대상지로 선정·시행하였으며,

그 결과 '17년 사고다발순위 9·16·19위 지역의 사업을 시행하였다면, 1,250,429천원의 교통사고 감소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으나, 9·19·24위 지역을 시행함으로써, 개선결과 예상되는 교통사고 감소편익이 1,184,022천원으로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.

[표1] 2017년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 경제성 분석(2016년 기본개선계획)

연도	구분	지점명	사고 순위	공사비 (천원)	경제성 분석		비고
					사고 손실액 (천원)	감소편익 (천원)	
17	소계	5 개소		438,955	1,177,200	1,371,750	
	시도	천안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○○ 앞 사거리	9	94,834	550,479	616,709	사업
	시도	당진시 ○○동 ○○○○ 앞 사거리	16	86,312	77,729	123,262	-
	시도	천안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○○	19	86,895	477,343	510,458	사업
	군도	금산군 ○○읍 ○리 ○○○○○ 앞 사거리	23	75,884	39,630	64,466	-
	군도	태안군 ○○읍 ○리 ○○○○ 앞 로터리 ○○○○	24	95,030	32,019	56,855	사업

※ 자료 : 충청남도 제출자료 재구성

한편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개선계획에 포함되는 사업대상지는 시·도 교통안전시행계획 및 시·군·구 교통안전시행계획에 따라 ○○○○공단 등과 협의하

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있고 시행계획에 따라 선정된 대상지는 사업을 완료하여 교통사고 저감효과를 발휘하게 하여야 한다.

그러나 이번 감사기간 중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현황을 확인한 결과, 2011~2015년(2012년~2016년 사업대상지)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개선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대상지점 총35개소 중 국고보조금이 교부된 사업대상지 12개소와 자체사업비 11개소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고 나머지 구간에 12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,

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중앙분리대, 교통섬, 보행자 안전지대 등 교통사고 예방시설을 설치하고 도로선형 개선 등 사업을 완료하였다면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 여건이 개선되어 사고가 감소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나,

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감사일('17.11.)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어 2013년도 미사업구간의 경우 현재까지 총 사고 55건(사망 2명, 부상 97명)이 발생하는 등 인명과 차량 등 재산손실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.

[표2]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 미 시행 현황

연도	구분	지점명	비고
2012	군도	부여군 ○○읍 ○○○○리	미시행
2013	시도	천안시 ○○동 ○○○거리	미시행
	시도	논산시 ○○동 ○○○거리	미시행
	군도	서천군 ○○읍 ○○병원 앞 로터리	미시행
	지방도	부여군 ○○읍 ○○리 ○○○교차로	미시행
	지방도	금산군 ○○읍 ○○리 ○○네거리	미시행
2014	시도	공주시 ○○동 ○○○○사거리	미시행
	군도	서천군 ○○읍 ○○○○ 앞 사거리	미시행
	지방도	청양군 ○○○○○○○○사거리	미시행
2015	시도	서산시 ○○동 ○○○거리	미시행
	시도	천안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○거리	미시행
	시도	당진시 ○○읍 ○○○○○○입구 ○거리	미시행

※ 자료 : 충청남도 제출자료 재구성

조치할 사항            충청남도지사는

[시정] 교통사고 잦은 곳 미 사업 구간에 대해 조속히 사업을 진행하시고, 사업 대상지 선정 시 「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 추진지침」에 따라 사고다발지역을 우선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.